

보도자료

다시, 건설인국! 서로크 국민의 나가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3. 9. 12.(화) 국무회의 종료 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 개정으로 확대된 농어민을 포함하여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한 가입기준 마련 -

- □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3.9.22일 시행)
- □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확대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기존에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것을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농어민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 개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가저축법')에서는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저축 장려금의 차등 지급을 위하여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올해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가저축법이 개정되어**, **확대된 농어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9.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을 농어민의 소득과 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변경한다.

기존에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가 저축법 개정(법률 제19258호, '23.3.21. 공포, 9.22.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농지 미보유 농업인(예: 농산물유통업자),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예: 수산 종자생산업자) 등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였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한다.

일반 농어민의 경우,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된다.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일반 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둘째, 금융위원회가 일반·저소득 농어민의 구분기준인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정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셋째,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른 농어민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2028.9.21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Ⅲ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농어가 저축법(법률 제19258호, '23.3.21. 공포, 9.22. 시행)과 함께 **2023.9.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9.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 9.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 ※ 일반 농어민 기준(잠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297,600원* 이하(저소득 농어민 제외) 저소득 농어민 기준(잠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월 220,900원* 이하
 - * 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요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82)		
			주무관	박민솔 (02-2100-2956)		





참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u> 취</u> 급 근 거	ㅇ '76.3.30 : 농수산부, 재무부 합의												
실 시 기 간	○ '85.12.23 : '농어가목돈마련저죽에 관한 법률」제정 ○ '86. 1. 1.('76.4.1) ~ 계 속												
취 급 기 관	ㅇ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가 입 대 상 (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구 분		개기	정 전				개정] 후				
		일반농	-어민	저소	득농어민	<u>l</u>	일반농		***************************************	득농어민			
	농 민	1ha초과~! 농지소유(임 타인농업	2ha이하 차) 농민 종사자	, , 농지소-	1ha이하 지소유(임차) 농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어 민	5톤 초과~2 어선 소유 양식어민,	구 어민, 어선원	3는 이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양축가	젖소 20대 일정규모의 양축	마리 등 가축소유	일반 - 1/2이ㅎ	일반 양축가의 1/2이하의 가축소유 양축가								
	임업인	5ha초과~1 산림·토지 _ 임업	[0ha이하 소유(임차] 인	5h) 산림·토	na 이하 지 소유(인 임업인]차)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가입제한)	타 분			전연도 농	-어업	외 소득이			상인 자			
가 입 한 도	구 분		일반	농어민			저소득농어민						
한 도	3년·5년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 하)					
	계약기간			ปะโ	0]자율	<u>F</u> (%)	7] 2	2 =				
이자율	3년 만기	일반						저소득 연 3.0					
기시표	5년 단기 5년 만기	연 0.9 연 1.5							연 4.8				
저축장려금	* 저축기기	'의 평균장의	한 금액을	그 ^{4.0} 근앤을 저추장려근으로 지근									
	*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 기본금리 변경 : ('15.1.1)3.39%→('16.1.1)2.59%→('17.1.1)2.05%→('18.1.1)2.45%→ ('19.1.1)3.11%→('20.1.1)2.72%→('21.1.1)1.82%→('22.1.1)2.91%→('23.1.1)5.34%												
장려금재원	ㅇ 정부출연급	금, 한국은행	불연금	, 기금 은	2용수익								
	구 분		5년				3년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축한도 총 나이야					면 240만원			720만원				
예상 수익*									720인권				
	기본금리		연 4.8%		<u>연</u> 연 1.5%		면 5.34% 면 3.0%		연 0.9%				
* '23년 기준으로 만기 때까지 월 20만원씩 저축할 경우	장려금 지급 금리 합기		면 10.14%		연 6.84%		연 8.34%		연 6.24%				
	기본이지		162.9만원		162.9만원		59.3만원		<u>59.3만원</u>				
			146.4만원		102.9단원 45.8만원		<u>59.3인 권</u> 33.3만원		10만원				
	이자소득 힙				208.6만원		92.6만원			69.3만원			
	만기 시 환		1509.3만원 1408.6만원				L.6만원	789.3만원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저축가입실적 (천좌, 억원)	′1:	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04 378	346	317	296	27		267	254	235			
	·	34) (76)	(66)	(67)	(59)	(59		(56)	(52)	(44)			
	불입액 12,3		11,176	10,037	9,587	9,50		11,588	12,949	12,903			
법정장려금 지급액(억원)									-				
		4 ′15	′16_	′17_	′18			′20	′21				
		1 000			046		747	650	CO 2	F22			
지급액(억원)	996 98	3 1,002	1,004	821	819)	717	658	682	533			
지급액(억원)	996 98	33 1,002	1,004	821	819	9	/1/	658	682	533			